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 
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전문위원 노형우

##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서 동 학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다.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.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기초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마. 안전 환경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 
(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별, 연령,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  - 안 제3조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 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.
  - 안 제6조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7조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4. 2. ~ '21. 4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